

## 기행문

## 백두대간 따라, 길 따라

— 유상식 회원 (前 경찰청 차장)



'한반도 걷기 5000리'를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해 오던 차 일자 구간인 땅 끝마을(토발)에서 통일전망대까지 2500리(약 1000Km) 걷기를 끝마쳤다.

북은 체증이 해소된 듯 신뜻한 기분이다. 지금 애써 북한을 거론하는 것은 대중화되었지만 한때는 북한을 미흡속에 품거나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 되던 시절이 있었다.

변화라면 엄청난 세월의 변화다. 따지고 보면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품이다.

그러나 누구도 한반도의 품속에 마음대로 안길 수 없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

나만의 심경일까! 이제 남북화합과 통일 열망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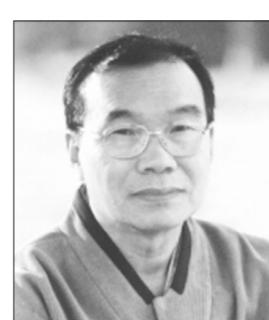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고, 북한산 상품이 버젓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남쪽의 기업이 북한에 터를 잡는 현실에서 내 땅 내 조국을 당당하게 가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나를 겪도록 부추겼다. 우선 보행이 가능한 남쪽 땅을 한 발짝, 한 발짝 더디면서 방방곡곡 금수강산을 완성하고, 또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 보고 남은 세월을 꼽씹어 보는 삶의 길도 걷고 싶었다.

두 사람의 동참자와 함께 걸었다. '한반도 통일 열망과 국토 사랑 현장 답사'를 명분으로 하고, '깨어있는 삶을 위한 심신 수행'을 화두로 걸었다. 하루 팔십여리를 걸기로 하고 현장을 예정했다. 내친김에 한반도의 끝적인 백두대간을 길 등무 삼아, 가장 가까이 하면서 걸기로 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했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상황은 북한을 자유로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루리는 어느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해의 8월 15일로 정했다. 내 생애에서 완성되기를 절실히 소망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을 마음에 두고, 그 먼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었다. 빌바닥이 불에 던 것 같이 회득거렸다. 발가락에서 허리까지 관절 마디마다 가 빠졌다. 오르막, 내리막, 고부랑길을 셀 수도 없이 걸었다. 미주 달려오는 자동차에 공포감도 수 없이 느꼈고, 매캐한 매연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온 천지에 눈 쌓인 길도 걸었고, 때늦은 폭설도 맞았다. 빛 길도 걸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온 몸을 밀어 부쳐도 걸었다. 사잇길로 가다 길을 잃고 길 아닌 길도 걸었다. 산길도 걷고 들길도 걸었다. 유년시절 고향을 연상하며 보리밭도 걸었다. 걸으면서 열 네 번의 백두대간을 넘나들었고, 두 번의 백두대간 산행도 했다. 6개도 27개시, 군을 지나쳤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실감했다. 걷는 동안 체중이 내리기는 했지만 진병은 없었다. 빌에 물집이라도 생기면 걷기가 어렵기에 매일 밤마다 발관리에 정성을 쏟았던 것이다.

## 名士칼럼



## 경찰의 권위와 봉사정신

## -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 할 수 있어야 -

—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 대표 · 두레교회 담임목사)

찰관이 오히려 총기를 빼앗긴 적까지 있었다. 이렇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는 경찰관들에게 해롭기 전에 시민들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경찰에게 권리 부여하는 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다. 시민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권리가 부여된 경찰이 시민사회와 질서를 확실히 지켜나감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 갈수록 경찰의 권리가 오히려 높다.

미국에서나 영국에서의 경찰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거의 절대적이다. 듣기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과감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경찰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점 중에 가장 중요한 면의 한 가지가 수사권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사회는 어떤 이유에서 인자를 몰라도 경찰이 너무나 겸활에 예속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나로서는 이 분야에 전면 비전문가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바이지만 민주경찰, 봉사경찰을 말하면서 먼저 그에 준하는 권한부터 주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도 시민의 무질서를 단속하던 일선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매를 맞았다는 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몇 해 전에는 경

그런 권리 중에 경찰 자체에서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분들은 한국 경찰의 수준이 아직은 그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도 들은 적 있으나 그 문제는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권한과 처우가 주어져야 좋은 경찰관들이 모이는 것이지 탓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경찰대학에 가는 입학생들의 수준이나, 요즘 들어 경찰에 입문하는 지원자들의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런 권리와 처우가 주어진 후에 시민들에게 행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성경 중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3가지 일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글을 읽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다음에 적는 3가지 종류의 일꾼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첫째는 강도와 절도 같은 일꾼이다. 둘째는 색포 일꾼이다. 셋째는 희생과 혼신으로 일하는 일꾼이다.

첫 번째의 유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치부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일신과 일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일꾼이다. 경찰 중에서도 요즈음은 그런 일꾼이 거의 없어졌지만 지난날에는 그런 경찰관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예를 들어 박종철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의 경찰이 그런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두 번째의 유형은 삶을 받은 만큼, 대접받는 만큼만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힘 드는 자리, 음지(陰地)는 피하여 들고 쉬운 자리 양지(陽地)만 찾으려 드는 유형일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의 유형은 시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 할 줄 알고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행사하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일꾼이다. 이런 일꾼들은 자신이 받는 처우에 관계없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한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의 진정한 본을 보이셨다. 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나라와 국민들은 경찰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좋은 처우를 하려고 힘쓰고 경찰은 봉사정신으로 시민을 섬기려 할 때 좋은 경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 경찰의 수사권 독립 더 미룰 수 없다

## - 언제까지 상명하복 관계인가? -

— 황하성 회원 (충북 옥천 경우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경찰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경찰에서는 「경찰의 자질로 보아 국민의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히 있고, 따라서 수사의 미진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어 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다」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확실히 달라졌다. 경찰의 자질이 문제되자 정부에서는 경찰대학을 설립하여

1984년부터 매년 120명씩의 얼리트 경찰초급간부를 양성, 21년 동안 2,500여명의 중경간부를 배출하였고 또한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학생, 그리고 법대생 등

또한, 94%의 사건을 처리한 경찰과 6%도 안되는 사건을 처리한 수사요원들을 일선에 배치, 형사사건의 99%를 전담하고 있으나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몇 년 전 어느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한국경찰의 범인

검거율이 85%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 범죄사건 중 94%가 경찰이, 나머지 6%는 검찰과 기타 수사기관에서 처리했다고 한다.(2004년 통계)

검찰에서는 매년 연말에 경찰의 비리와 법적용의 오류로 국민의 인권침해 등의 사례를 연례행사처럼 통계자료로 보도했는데 경찰이 무능하다는 여론을 조성, 수사권 독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찰은 오류나 비리가 없었는가?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고, 검사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변사사건까지도 검사의 지휘를 받다보니 유족들의 장례일정에 차질이 생겨 민원을 사는 경우도 많다. 사체검안이나 현장조사는 거의 99%를 경찰에서 실시함에도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모순이 있다.

막강한 권력은 부패의 온상이 된다고 한다. 그 부패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권력을 분산하여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기구가 없다.

현행법에는 검찰의 비리나 범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 대책이 우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다. 검사지휘권에서 벗어나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만 된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것만이 검찰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되어 검사나 판사에 임용되지 못한 사람 중에서 경찰자체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 이에 합격한 일정 인원을 경찰에서 특채할 때는 경정으로 임용된다. 경정이면 일급서의 과장급으로 경찰서장인 총경의 지시 감독을 받게 되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총경은 고사하고 경무관까지를 검사의 지

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 권력도 부족하여 치안정감까지 검사의 지휘권내로 끌어들여 경찰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식민지 통치를 하던 일본제국주의 체제의 유산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이미 벌써 개정되어야 할 법률이 아닌가? 일본도 이 형사소송법은 민주주의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개정하지 않았는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은 이 법 개정을 왜 반대하는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1945년 이후 60년 동안 14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나 부분개정만 하고 반드시 개정해야 할 핵심부분인 검경간의 상명하복 종속관계(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동법 제196조)는 그대로 존속, 현재까지 사용해 있는데 이와 같은 상명하복의 종속관계의 법률을 운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오직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매우는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낡은 이 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다듬고 손질하는 것이 시대적인 질실한 요구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 2005학년도 후기 마약범죄학 석사 과정 신입생 모집 (야간 · 석사 4학기 과정)

■ 학과설립목적 : 마약범죄수사 전문능력, 마약중독자 치유 재활 등 21세기 특성화 교육

## ■ 지원자격 :

- 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나. 디지털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위 취득자
- 다. 학점은행제 및 독학 학위 취득자
- 라.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
- 마. 외국 대학에서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모집과정 : 석사과정 ○○ 명, 연구과정 ○○ 명

■ 교과목 : 범죄심리학, 마약과 건강, 조직범죄론, 마약범죄수사론, 마약사법행정론 등 16개 과목

■ 수업연한 : 4학기, 주 2회 수업(화·목) 18:30 ~ 22:00

■ 학위취득후 진로 : 마약퇴치 관련 기관 전문능력 적용, 박사학위 취득 후 마약범죄학, 경찰행정학과 등 개설 대학교 교수 요원 진출 가능

※ 학위 : 마약범죄학 석사(마약범죄학 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유일한 대학교)

■ 특 전 : 석사학위, 관련 공무원 근무 평점시 고과 점수 인정

※ 경찰·군·수사기관 등 현직 공무원은 수업료 20% 감면

※ 육·해·공군 학군 제휴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50% 혜택

■ 자격증 : 마약지도사

■ 전형일정 및 방법

가.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 소
원서교부	2005. 5. 09(월)~5.18(수)	• 본교 정문 수위실, 본 대학원 교학과 또는 홈페이지 내려받기
원서접수	2005. 5. 09(월)~5.18(수) (09:00~20:00)	• 본 대학원 교학과 (화도관 205호) •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접수(e-mail : sokyo@kw.ac.kr) • 토요일·일요일 휴무
전형일시	2005. 5. 21(토) 14:00	• 각 전공 주임교수실(호실은 별도공지) • 학과별 발표안내는 추후 공지 예정

나.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반영함판 사진(3cm × 4cm) 4매

마. 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 등본 1부

## ■ 기타 모집학과

가. 행정관리학과 : 행정관리전공

나.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전공 · 청소년지도복지전공

다. 심리치료학과 : 심리치료전공 · 심리전략전공